

후반부> - 스튜디오 토론의 장

주제 I. 성매매, 어떻게 봐라봐야 하나?

주제 II. 성매매 산업의 현주소

주제 III. 성매매 산업이 급증하는 원인

주제 IV. 통제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주제 V. 바람직한 형사법적 접근은?

신교수

인류에게 '성'은 원초적인 본능이라고 합니다.

맹자도 '식색은 성'이라며 성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능임을 인정했는데요.

이렇게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인간의 오랜 역사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성매매 산업은 이미 본능의 수준을 넘어서서 국가경제를 위협할 정도가 됐는데요. 국내총생산의 4.1%에 달하는 자금이 성매매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이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매매로부터 대한민국이 안전할 수 있는 바로 그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장기자

이 시간 함께 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은경 박사,

한국여성단체연합 조영숙 정책실장,

이찬진 변호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주제 I. 성매매,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신교수

Q1>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각?

세기말을 지내오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로 던져진 것이 바로 '성'이다... 이미 원조교제로 불리는 청소년 성매매는 물론, 인터넷 등을 이용한 신종 매매춘이 성행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윤락여성들의 인권문제도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는 성매매 문제...
그 근절 대책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성매매'를 바라보는 세 분의 시각이 궁금하다...
성매매란 어떤 것이며, 그 개념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해야 한다고 보나?

(-조영숙 정책실장님 : 유엔에서 정의한 성매매 의미와 여성계의 입장...)

(-김은경 박사님과 이찬진 변호사님
: 학계와 법조계의 입장에서의 보충의견...)

Q1-1> 성매매, 비범죄로 볼 수도 있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해서 성매매가 엄연히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범죄행위에 해당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일부에서는 '성매매는 사회의 필요악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성매매를 범죄행위로 인식하는 것에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위험한 발상도 나오고 있다...
이것에 대한 의견은?

주제 II. 성매매 산업의 현주소

장기자

Q2> 성매매 규모 조사의 배경과 목적...

이번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성매매 산업이 그동안 얼마나 거대산업으로
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다...
전문적인 성매매 종사여성이 최소 33만명에 이르고,
성매매 거래규모는 24조원...
이것은 국내총생산의 4.1%에 해당되는 규모라고 하는데...
이번 연구의 배경과 목적은 어디에 있나?

(-김은경 박사님)

Q2-1> 우리나라 성매매 실태와 현황...

이번 조사의 결과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 보자...
이번 조사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성매매 실태...
그 규모 면에서나 종사여성의 생활사로 봐서나 상당히
심각한 듯 싶은데... 과연 어느 정도나 심각한가?

(-김은경 박사님 : 성매매 형태에 따른 업소, 종사자수 등의
현황과 실태... 종사여성의 생활 실태...)

(-두 분 보충의견)

Q2-2> 조사결과가 시사하는 점...

이번 조사결과를 보고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가장 문제라고 보는지??
이 조사결과는 우리에게 어떤 점을 시사한다고 보나?

(-세 분 대답)

주제 III. 성매매 산업이 급증하는 원인

신교수

Q3> 성매매 산업 급증, 그 원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업형 성매매보다도 겸업형 성매매
업소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흥업소의 증가가 성매매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가 등장,
성매매가 점점 더 산업화되고 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성매매 산업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세 분 대답)

주제 IV. 통제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장기자

Q4> 각 국가사법당국이 성매매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

윤락여성들의 빚 문제 해결이나 신변안전과 보호 등은 결국
국가사법당국이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수행해 나가느냐에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해서 엄격히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조영숙 정책실장님

: 강력히 금지하고 있는 나라와

일부분 허용하고 있는 나라 등 외국의 사례...)

Q4-1> 현재의 이중적인 단속, 개선될 수 있나?

우리나라의 경우 법으로는 엄격히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실제적으로는 단속이나 통제가 전혀
안되고 있는 것인가?

(현재 이중적인 단속이 개선될 수 있을까?)

(-세 분 대답)

신교수

Q5> 성매매, 법으로 뿌리뽑을 수 있을까?

이처럼 성매매가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윤방법은 사문화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한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과연 성매매를 법으로 뿌리뽑을 수 있다고 보나??

(-세 분 의견)

신교수

Q6> 형사법적 대응현황과 문제점?

더구나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성매매 사건의 형사법적 대응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다소 있다... 일단은 관련법률에 따라 형사법적 처우도 차별이 심하다... 예를 들면 검거, 구속에 있어서 청소년보호법의 경우에는 52.3%, 윤방법의 경우 단 9.9%의 구속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처럼 두 법률의 처리방식에 불균형이나 현행 법체계상 개별적 법률에 의해서 분절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이런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의문이다... 현재 성매매 사건에 있어서 형사법적 대응현황... 그리고 그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김은경 박사님 : 이번 조사결과와 현황 위주로...)

(-조영숙 실장님 : 판례나 사건 등 실례 위주로...)

(-이찬진 변호사님 : 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인지... 문제점과 개선책...)

주제 V. 바람직한 형사법적 접근은?

장기자

Q7> 성매매금지법안 마련, 진행상황과 핵심내용...

그렇다면 이제 현재의 윤방법을 대신할 보다 실효성있고 강력한 법안이 필요한 때이다...
이미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지난해 9월,
성매매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매매금지법안의 제정은 노무현 당선자의 공약이기도 했다..
현재 법안 마련을 위한 준비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핵심내용은 무엇인가?

(-조영숙 실장님)

신교수

Q8> 단순윤락의 처벌논란?

현재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제출한 성매매금지법안을 놓고,
일부 법조계나 학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먼저, 처벌기준에 관한 논란이 그것이다...
감금이나 가혹행위 등은 물론 알선, 매개, 장소제공을
했을 때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듯...
그러나 어떤 중간매개나 알선자가 포함되지 않은,
이른바 원조교제 같은 직거래 형태의 단순윤락의 처벌은
좀 더 다르게 생각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한 세 분의 의견은?

(-세 분 대답)

Q8-1> 윤락여성도 피해자로 보는 시각?

또 하나 기존의 윤방법에서는 성을 산 사람이나 판 사람
모두 가해자로 보고 처벌을 했지만,
성매매금지법안에서는 성매매여성은 피해자로 보고,
처벌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현재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청소년들까지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성매매여성을 피해자로 봐야 할 것인가가 논란이다...
이에 대한 의견은?

(-세 분 대답)

장기자

Q9> 성매매 방지, 탈성매매를 위한 해법을 찾는다...

마지막으로 성매매 방지와 탈성매매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정부와 행정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세 분 대답)

신교수

(마무리)

오늘 말씀 나눠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전원 인사)

